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4.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환경사업소장)
제출 연월일	2024.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조정(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조정 (안 제3조)

- 조성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기금의 관리 개정 (안 제7조)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구체화 (안 제10조)

- 마을 발전기금 적립(해당 연도 적립 기금의 5% 이내)
-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주민 편의시설에 한한다.)

- 주민 주거환경(생활환경 포함) 개선사업 및 농업·축산업 관련 지원
-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방법 신설 (안 제13조)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3. 개정(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4. 9. 12. ~2024. 10. 4. / 의견서 첨부

다. 예산관련 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바. 그 밖에 참고사항 :

[붙임]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를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지원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적립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발전기금 적립(해당 연도 적립 기금의 5% 이내)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주민 편의시설에 한한다.)
4. 주민 주거환경(생활환경 포함) 개선사업 및 농업·축산업 관련 지원
5.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제13조 제1항 중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를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간사

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지원 금의 범위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신 설>

② -----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적립한 주민지원기금-----
-----.

③ 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발전기금 적립(해당 연도 적립 기금의 5% 이내)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주민 편의시설에 한한다.)
4. 주민 주거환경(생활환경 포함) 개선사업 및 농업·축산업 관련 지원
5.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

-----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금을 조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예산 편성 내역

(천원)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편성액	80,000	90,580	90,580

4. 작성자 : 환경사업소 지방환경서기보 김정현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김병용(고령군 쌍림면 신곡2리 마을회)

○ 주 소 : 고령군 쌍림면 안박실길2

○ 전 화 번 호 : 010-3549-4747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규모) 2호 “삭제”	<p>조례 제3조2호 삭제에 대하여 신곡2리 마을회는 마을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을 감안하여 <u>삭제하는 것을 결사반대</u> 합니다.</p> <p>이는 사전에 마을주민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절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p> <p>군에서는 소각시설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p>	
제10조제3항 신설에 대하여	<p>제10조제3항1호에 대해서 <u>년도별 적립내역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u> 한다는 내용 추가 해줄것을 요구 하며,</p> <p>-5호 생활지원금은 <u>현금지원</u> 이란 문구 삽입을 요구합니다(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현금 지원하고 있음)</p> <p>-추가로 그 밖에 <u>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u> 결정하는 사항을 추가 삽입한 것을 요청드립니다.</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환경사업소	
연 락 처	054-950-7054